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증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05. 11. 14.

사회건설위원회

## 1. 審查經過

- 가. 제출일자 : 2005년 11월 7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 다. 회부일자 : 2005년 11월 9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1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5년 11월 10일) 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 유근)

## 가. 제안 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2005.5.31) 및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4.12.31)됨에 따라 법규에 맞게 일부내용을 정비·보완하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환경보전활동에 공헌이 많은 국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제3호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개정하고, 제5호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신설(추가)
- 안 제4조 제7호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 한다.를 신설(추가)
- 안 제5조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 할 직무를 진다.”로 개정하고, 각 호를 신설(추가)
- 안 제10조의 제목 및 각 항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개정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상위 법령에 맞게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를 “10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
- 안 제15조 제3항에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않은 국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를 신설(추가)

- 안 제21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 를 “제1항의 규정에 …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로 개정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專門委員 이 날 식 )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2005.5.31)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4.12.31)됨에 따라 법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3호 「원인자 부당의 원칙」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당의 원칙」으로 개정하고, 제5호에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신설(추가)하며
- 안 제4조 제7호에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를 신설(추가)함.
- 안 제5조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
  - 제1호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제2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제3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체 보전에 관한 사항
  - 제4호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 제5호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호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제7호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제8호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 제9호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추가)하며.
- 안 제10조에는 「환경 보전계획 작성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 안 제15조제3항을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를 신설(추가).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05.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를 법규에 부합되도록 관련사항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상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도시환경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 환경오염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 민간환경단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3조(기본원칙) 제3호“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개정하고, 제5호“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신설
- 나. 제4조(정의) 제7호“친환경적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를 신설
- 다. 제5조(구의 책무) 전문을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 할 책무를 진다.”로 개정하고, 각호를 신설.
- 라. 제10조의 제목 및 각항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단서 신설

- 마. 제15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바. 제21조(구민의 참여 등)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를 “②제1항의 규정에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4(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항, 같은법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항, 같은법 제14조의4(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등)제1항 및 같은법 제37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항, 제2항
- 친환경상품구매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같은법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구매 의무)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3조 (기본원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필요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파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증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친환경적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중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를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적상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감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생 략)</p> <p>1. ~ 2. (생 략)</p> <p><u>3. 원인자부담의 원칙</u></p> <p>4.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u></p> <p>4. (현행과 같음)</p> <p><u>5.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u></p>
<p>제4조 (생 략)</p> <p>1. ~ 6.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친환경적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p>
<p>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 할 책무를 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5조(구의 책무) .....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p> <p>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p> <p>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p> <p>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p> <p>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적상품 생산·구매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p> <p>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p> <p>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p> <p>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p>

